

1. 개정이유

보건복지부장관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업무, 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업무의 효율성, 전문성 제고(안 제42조)

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, 검사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

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(결과 공표는 제외한다)의 일부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(법 제4조제2항, 제33조제2항·제8항·제10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)의 일부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2조(업무의 위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(결과 공표는 제외한다)의 일부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<u>⑤ · ⑥</u> (생략) <u><신 설></u>	<u>⑥ · 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</u> <u>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(법 제4조제2항, 제33조제2항 · 제8항 · 제10항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)의 일부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<u>⑦ ~ ⑩</u> (생략)	<u>⑨ ~ ⑫ (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)</u>